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현 (외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은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유형을 나열하고 있음.
- 상기 행위에는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동항 제13호)이 포함되나, 동법 시행령에 이를 구체화하는 규정이 없어, 제1호에서 제12호까지의 행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선박의 무해통항과 관련이 없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하였음.
- 이에 ‘통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이러한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5조의2 신설
 - ▲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정박·정류(停留)·계류 또는 배회(徘徊) ▲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등을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 규정(제1항 제1호-제2호)

-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또는 위험하거나 조난 상태에 있는 인명·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제2항)
- 여타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도 법 제5조 제2항 제13호 소정의 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시행령을 통해 명문화(제1항 제3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 ① 법 제5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정박·정류(停留)·계류 또는 배회(徘徊). 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무역항의 수상 구역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 또는 불개항장에서의 기항 허가를 받고 대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통항과 직접 관련 없이 다른 선박에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행위
 3. 그 밖에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위험하거나 조난상태에 있는 인명·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조의2(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 ①법 제5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정박·정류(停留)·계류 또는 배회(徘徊). 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 또는 불개항장에서의 기항 허가를 받고 대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통항과 직접 관련 없이 다른 선박에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행위 3. 그 밖에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이나 조난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위험하거나 조난
상태에 있는 인명·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
에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외교부 국제법규과	
연 락 처	(02) 2100 - 7199